

## 변경 대비 표(일반 및 자펀드)

1. 대상 펀드:

no.	펀드명	보수 인하	법 개정	변동성
1	미래에셋드림타겟증권투자회사(주식)	○	○	-
2	미래에셋디스커버리증권투자회사(주식)	○	○	-
3	미래에셋베트남증권투자회사 1 호(주식혼합)	-	-	○

2. 변경 사항:

- 1)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인하
- 2) 자본시장법 관련 개정사항 반영
- 3) 변동성 값 업데이트

3. 효력발생일: 2018년 12월 27일(목)

4. 변경 내용:

- 1)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인하

<정관>

구분	정정 전	정정 후
제61조(집합투자업자 보수 등)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회사보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보수율에 보수계산기간 중 당해 종류 주식에 상당하는 회사 재산의 순자산가치의 평균잔액(매일의 당해 종류주식에 상당하는 회사 재산 순자산가치를 보수계산기간의 초일부터 보수계상 당일까지 누적 하여 합한 후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u>&lt;미래에셋드림타겟증권투자회사(주식)&gt;</u></p> <p>(종류 A 주식), (종류 A-e 주식), (종류 AG 주식), (종류 C 주식), (종류 C2 주식), (종류 C3 주식), (종류 C4 주식), (종류 C-e 주식), (종류 CG 주식), (종류 S 주식), (종류 I 주식)</p>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회사보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보수율에 보수계산기간 중 당해 종류 주식에 상당하는 회사 재산의 순자산가치의 평균잔액(매일의 당해 종류주식에 상당하는 회사 재산 순자산가치를 보수계산기간의 초일부터 보수계상 당일까지 누적 하여 합한 후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u>&lt;미래에셋드림타겟증권투자회사(주식)&gt;</u></p> <p>(종류 A 주식), (종류 A-e 주식), (종류 AG 주식), (종류 C 주식), (종류 C2 주식), (종류 C3 주식), (종류 C4 주식), (종류 C-e 주식), (종류 CG 주식), (종류 S 주식), (종류 I 주식)</p>

	<p>1. ~ 3. (생략)</p> <p><b>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6</b></p> <p>&lt;미래에셋디스커버리증권투자회사(주식)&gt;</p> <p>1. ~ 2. (생략)</p> <p><b>3.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6</b></p>	<p>1. ~ 3. (생략)</p> <p><b>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3</b></p> <p>&lt;미래에셋디스커버리증권투자회사(주식)&gt;</p> <p>1. ~ 2. (생략)</p> <p><b>3.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3</b></p>
--	---	---

<투자설명서>

구분	정정 전	정정 후
<p>제2부.6.집합투자기구의 구조. [종류형 구조]</p>	<p>&lt;미래에셋드림타겟증권투자회사(주식)&gt;</p> <p>(종류 A 주식), (종류 A-e 주식), (종류 AG 주식), (종류 C 주식), (종류 C2 주식), (종류 C3 주식), (종류 C4 주식), (종류 C-e 주식), (종류 CG 주식), (종류 S 주식), (종류 I 주식)</p> <p>1. ~ 3. (생략)</p> <p><b>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6</b></p>	<p>&lt;미래에셋드림타겟증권투자회사(주식)&gt;</p> <p>(종류 A 주식), (종류 A-e 주식), (종류 AG 주식), (종류 C 주식), (종류 C2 주식), (종류 C3 주식), (종류 C4 주식), (종류 C-e 주식), (종류 CG 주식), (종류 S 주식), (종류 I 주식)</p> <p>1. ~ 3. (생략)</p> <p><b>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3</b></p>
<p>제2부.13. 나.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p>	<p>&lt;미래에셋드림타겟증권투자회사(주식)&gt;</p> <p>(종류 A 주식), (종류 A-e 주식), (종류 AG 주식), (종류 C 주식), (종류 C2 주식), (종류 C3 주식), (종류 C4 주식), (종류 C-e 주식), (종류 CG 주식), (종류 S 주식), (종류 I 주식)</p> <p>1. ~ 3. (생략)</p> <p><b>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6</b></p> <p>&lt;미래에셋디스커버리증권투자회사(주식)&gt;</p> <p>1. ~ 2. (생략)</p> <p><b>3.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6</b></p>	<p>&lt;미래에셋드림타겟증권투자회사(주식)&gt;</p> <p>(종류 A 주식), (종류 A-e 주식), (종류 AG 주식), (종류 C 주식), (종류 C2 주식), (종류 C3 주식), (종류 C4 주식), (종류 C-e 주식), (종류 CG 주식), (종류 S 주식), (종류 I 주식)</p> <p>1. ~ 3. (생략)</p> <p><b>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3</b></p> <p>&lt;미래에셋디스커버리증권투자회사(주식)&gt;</p> <p>1. ~ 2. (생략)</p> <p><b>3.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3</b></p>

2) 자본시장법 관련 개정사항 반영

<정관>

구분	정정 전	정정 후
제53조(자산운용의 제한)	②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일부환매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52조제1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이 조 제1 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 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u>부도 등으로 매각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u>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②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일부환매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52조제1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이 조 제1 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 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u>부도 등으로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u>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56조(차입 및 보증의 제한)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주식의 환매청구 또는 주식의 매수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환매대금 또는 매수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에는 차입 당시의 회사 재산 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주식의 환매청구 또는 주식의 매수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환매대금 또는 매수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u>또는 그 밖에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및 결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금전의 차입이 필요하고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때로서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때</u> 에는 차입 당시의 회사 재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투자설명서>

구분	정정 전	정정 후
제2부.8.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위의 표 생략) * 아래 항목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상기 ⑦, ⑧, ⑨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 ( <u>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u> )에 그 투자한도에	(위의 표 생략) * 아래 항목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상기 ⑦, ⑧, ⑨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 ( <u>부도 등으로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u>

<p>적합하도록 함</p> <p>(가) 투자회사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p> <p>(나) 투자회사의 일부환매</p> <p>(다)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p> <p>(라) 투자회사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p> <p>(마)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p>	<p><b>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에</b></p> <p>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함</p> <p>(가) 투자회사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p> <p>(나) 투자회사의 일부환매</p> <p>(다)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p> <p>(라) 투자회사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p> <p>(마)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p>
--	---

### 3) 변동성 값 업데이트

펀드명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등급	변경 후 등급
미래에셋베트남증권투자회사1호(주식혼합)	15.24	15.74	2	2

## 미래에셋자산운용(주)